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의3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선정 대리인 기준 금액 정비(안 제4조의3)
: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 : 1천만 원 -> 2천만 원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세정과
- 라. 입법예고 : 2025. 3. 27. ~ 2025. 4. 17.(21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세무전문가가 영세납세자를 대신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나.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신청 금액 상향 : 1천만원 -> 2천만원)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신청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재정경제국 세정과장 장동단